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점검일시 : 2018.12.14 (금)

□ 점검결과

◆ 점검자 : 윤원섭, 박상종

○ 중량물취급 안전(방재시설부)

- 현장에 자재 양중에 사용되는 슬링벨트는 마모가 진행중으로 양중시 위험 하오니 폐기 조치 바람.
 ※ 건설안전 기본지침 II. 낙하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 건설기계 안전(방재시설부)

- 현장에서 사용중인 굴삭기는 근로자 협착 및 충돌재해 예방을 위하여 장비실명제 및 후해지 장치를 설치 하여 안전성 확보 요망.
 ※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032(굴삭기)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작업구간에 비치된 이동식 소화기는 정기적(매월1회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기 바람.
 ※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 소방시설 설치및관리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현장에서 사용중인 유류 계통은 화재 위험이 있으니 위험물 저장소로 이동하여 관리 바람.
※ 건설안전 기본지침 VII.화재/폭발/질식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 사면 안전(방재시설부)

- 기존 콘크리트 깨기 구간 우기시또는 사면 구배가 확보 되지 않아 SLIDING파괴 우려되어 붕괴위험이 있으니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사면보호 조치 바람,굴착면 직상부에 근로자나 중차량 등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기 바람.



○ 전도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3-2구간 지하 3층 구조물 내 바닥에 채수된 물이 결빙되어 근로자 통행 시 전도 재해가 우려되니 제빙을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빙할 수 있는 제설제 등을 비치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전도의 방지)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5-5구간 자재 운반을 위하여 철거한 안전난간은 재설치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추락재해가 우려되니 재설치하기 바람, 자재 운반 등으로 철거된 안전시설은 작업이 완료된 즉시 복구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6-3구간 개구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추락방호 덮개는 그 설치 상태가 미비하여 일부 개구부가 개방된 부분이 있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보완하기 바람.

- 개구부 덮개 앞 접근금지 시설(띠)은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인지하기 쉽고,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기계기구 안전(방재시설부)

- 6-1구간 작업장에 있는 핸드그라인더는 회전부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어 회전날 파손시 비래 재해가 우려되고,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그라인더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근로자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핸드그라인더 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전선은 접지 점검결과 미접지로 측정되니 접지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 건설안전 기본지침 p41(1. 기계 등의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 추락재해 예방(방재시설부)

- 5-1구간 환기구 벽체 및 슬래브 거푸집 작업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비계는 작업발판이 밀실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작업발판 위에 강관, 발판 자재 등이 놓여 있어 근로자 전도 및 추락 재해가 우려되니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 등 보완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추락의 방지)

